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

가. 의안번호 : 제2478호

나. 발 의 자 : 송명화 의원 외 18명

다. 제안일자 : 2021년 5월 2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신설(안 제3조의2)

나.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안 제4조제2항제5호)

다.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2항)

라.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에 공개함(안 제20조)

마.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 (안 제21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신설하고, 컨설턴트 양성, 추진사업의 성과 공개, 표창 수여 등을 규정해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는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되었고(2006년「국가재정법」개정),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었음(2011년「지방재정법」개정).

○ 2021년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329개(전년대비 △4개)에 3조 6,083억원(전년대비 5,833억원 증가)으로, 2019년 이래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7~9%의 범위로 편성되면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음.

< 연도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대상사업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계	사업수	329 (100.0)	333 (100.0)	373 (100.0)	272 (100.0)	269 (100.0)	236 (100.0)	131 (100.0)	92 (100.0)	60 (100.0)
	예산	3,608,290 (100.0)	3,025,020 (100.0)	2,908,919 (100.0)	2,234,256 (100.0)	1,846,842 (100.0)	1,287,594 (100.0)	785,456 (100.0)	405,881 (100.0)	272,186 (100.0)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사업수	50 (15.1)	38 (11.4)	201 (53.9)	102 (37.5)	105 (39.0)	137 (58.1)	55 (42.0)	35 (38.0)	37 (61.7)
	예산	838,282 (23.2)	789,551 (26.1)	1,935,244 (66.5)	1,543,549 (69.1)	1,177,080 (63.7	967,747 (75.2)	384,334 (48.9)	154,082 (38.0)	162,178 (59.6)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	사업수	143 (43.5)	140 (42.0)	86 (23.1)	84 (30.9)	79 (29.4)	61 (25.8)	52 (39.7)	30 (32.6)	23 (38.3)
	예산	490,651 (13.6)	348,828 (11.5)	143,049 (4.9)	378,509 (16.9)	507,703 (27.5)	265,531 (20.6)	316,164 (40.3)	155,964 (38.4)	110,008 (40.4)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수	136 (41.3)	155 (46.5)	86 (23.1)	86 (31.6)	85 (31.6)	38 (16.1)	24 (18.3)	27 (29.3)	- -
	예산	2,279,377 (63.2)	1,886,641 (62.4)	830,626 (28.6)	312,198 (14.0)	162,059 (8.8)	54,316 (4.2)	84,959 (10.8)	95,835 (23.6)	- -

다.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안 제3조의2 신설)

○ 안 제3조의2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대상사업에 관한 4가지 운영원칙을 신설하고 있음.

제3조의2(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성평등 목표 수립시에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고(제1호),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지수[1]를 반영토록 하여(제2호)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교육·건강·고용·생활환경 등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 설정과 함께 국가 성평등지표와 연계하도록 하였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게 선정하고(제3호),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표시하여(제4호)[2] 성인지 예산제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매년 7월말까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음.

○ 개정안의 운영원칙은 정부의 성인지 예산기준에 맞춰 예산 수혜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지방 지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일반 예산과의 차별성, 독자성을 강조하는 등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원리를 제시하였음.

---

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업설명서에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임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음.

라.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안 제4조 제2항)

○ 성인지 예산은 편성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평등 목표 및 편성 방향, 주민참여 및 홍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성인지 예산의 분석·평가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4조).

○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하거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에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컨설팅 인력 양성(안 제16조 제2항)

○ 안 제16조 제2항은 성인지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컨설팅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학 전문가,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이 끝난 8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컨설팅은 성인지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른 컨설팅 의견 제시와 신청자와의 맞춤형 건설팅으로 진행되며, 2019년 529건(컨설턴트 5명), 2020년 779건(건설턴트 7명)을 수행하였음.

○ 성인지 예산제는 시행 이후 예산의 성별 수혜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원의 배분 구조와 방식이 변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은 만큼 운용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는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음.

○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컨설턴트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와 신규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추진사업의 성과 공개와 표창(안 제20조, 안 제21조 신설)

○ 안 제20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 사업과 추진 성과를 시민이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안 제21조는 매년 실시되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성인지 사업에 대한 실적 공개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입법효과가 있음.

○ 또한, 성인지 예산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2133-8055